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4.

발의자 : 권칠승 · 김승남 · 정춘숙

김철민 · 임호선 · 민병덕

김승원 · 강준현 · 도종환

강병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,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,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,

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,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(안 제24조).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협의회는”을 “협의회(이하 “조정원 협의회”라 한다)는”으로, “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”를 “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조정원에 설치하는”을 “조정원”으로, “협의회가 선출하고”를 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협의회에서 선출된”을 “협의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⑫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신 설>

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⑫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